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034

발의연월일: 2021. 6. 23.

발 의 자 : 권명호·강기윤·구자근

김도읍 • 송언석 • 엄태영

유상범 • 이만희 • 최춘식

최형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함)을 지정할 수 있음.

다만, 전담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 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.

그러나,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,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(안 제12

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		개 정 안
제12조(전담기관의	지정	등)	1	제12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
~ ③ (생 략)				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		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
				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
				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
				<u>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
<u>④·⑤</u> (생 략)				<u>⑤</u> ・ 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
				과 같음)